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96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강승규 · 김위상 · 김소희
구자근 · 신동욱 · 김미애
김기현 · 성일종 · 강명구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1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단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산업단지 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완화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1(사업)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45조의21(사업) ① · ② (현행 과 같음) <u>③ 공단은 산업단지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 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 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다.</u>
④ · ⑤ (생 략) <u><신 설></u>	④ · ⑤ (현행과 같음) <u>제47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산업단지 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 여는 같은 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 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완 화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